성주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2년 3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 공영주차장의 무료이용 및 에너지 절약형 차량(경차, 하이브리드, 전기)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사유를 추가하여 공영주차장 이용도를 높이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개정에 따라 성주군주차장 조례의 관련된 규정 일부를 개정하여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에 대한 내용 신설(안 제4조제1항)

나.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경자동차 기준을 800cc 이하에서 1,000cc 미만로 변경(안 제5조제2항)

다. 주차요금 감면 사유에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 추가(안 제5조제2항)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준농림지역 안”을 “관리지역”으로 변경(안 제15조제1항)

마. 「건축법」 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 조문 수정(안 제15조제1항)

○ 건축법 제8조(건축허가)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 건축법 제9조(건축신고)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19조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주차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차요금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800cc 이하”를 “1,000cc 미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이라 함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와 「건축법」 제14조의 건축신고를 받아야 하는 구역을 말하며 축사 및 식물관련 시설은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 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단서 신설>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다만, 공영주차장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차요금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주차요금 감면) ① (생 략)	제5조(주차요금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1]에서 정한 주차요금의 2분의 1을 경감한다.	②----------.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배기량 800cc 이하의 경자동차	2. ---------- 1,000cc 미만 ----------
<신 설>	3.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
제15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 ①법 제19조 제1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준농림지역안”의 적용 범위는 성주군 전역의 준농림지역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대상 건축물과 건축법 제9조의 신고대상 건축물에 한하며 축사 및 식물관련 시설은 제외한다.	제15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이라 함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와 「건축법」 제14조의 건축신고를 받아야 하는 구역을 말하며 축사 및 식물관련 시설은 제외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